

긴급조치9호 첩폐투쟁 30주년 기념학술토론회

-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긴급조치9호 첩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 일시 : 2005년 5월 13일(금) 오후3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

홍 윤 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1. 유신체제를 역사화하는 일의 어려움

: '역사공동체' 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부실한 현재, 그리고
'우리 곁의 유신'

2005년 5월 현재 이 지구 인류의 역사 시기는 명백히 21세기에 들어서 있다. 유럽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체에 걸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적(historic) 사건들을 온전하게 역사로 만드는 일 즉 역사화(歷史化)의 작업은 아직도 완결되기 힘든 일로 여겨진다. 19세기 말서부터 비극적인 양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한국 현대사는 한번도 제대로 된 자기 역사를 갖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모든 사건은 기록되어 정리되기 전에 새로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예전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들은 그 사건의 부정적 여파에서 벗어나거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도약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생 동안 그 사건과 더불어 살아야 했다. 사건은 한번도 지양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던 개인들에게는 — 그(녀)가 승리자든 아니면 패배자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두 가지 부담이 계속 일생을 짓누른다.

그 중 하나의 부담은 과거가 어느 순간에는 기어코 현재를 제약하고야마는 악몽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용서받거나 극복되지 않은 과거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삶이 이어나갈 온당한 토대이기커녕 항상 현재의 삶과 경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하기도 한다. 이런 과거는 현재의 삶을 참으로 성가시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부담은 과거의 행위자(agent)에게 자기 사건의 관찰자(spectator)나 기록자(documentator)가 되기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인간 삶의 조건 중에 하지 못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행위자가 동시에 역사적 관찰자나 기록자가 되는 일이다.¹⁾ 관찰자나 기록자는 반드시 취사선택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건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자신의 온전한 삶 그 자체인 과거의 자기 사건에 관해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 자기 삶은 어떤 경우에도 편집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스스로의 삶 그 자체였던 과거의 사건을 절

1) 한 인간이 동시에 행위자이자 관찰자가 될 수 없는 인간 조건에 관해서는 H. Arendt, *Human Condition*, 1958 참조.

대 기념할 수 없다. 그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기념이란, 과거의 행위자가 감행한 행위로 인해 덕을 보았든 피해를 보았든 그 사건의 배경이자 모태로서 그 사건의 영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공동체의 몫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기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재생산 하는 정치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문화 공동체일 경우에는 특히, 그 공동체는 현재의 자기 모습을 있게 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질서 속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역사공동체로 발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바로 30년 전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지나갔지만, 30년 이후 바로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개성을 분명히 아로새기는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데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역정의 계기가 되었던 1975년 5월 13일을 기념하고자 모인 오늘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에게 이런 물음을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공동체인가? 오늘의 너희를 있게 한 바로 그런 일들을 자기 삶의 자산으로 건강하게 소화하여 우뚝 선 바로 그런 역사공동체인가? 과연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있게 한 그런 기억을 공유한 '역사민주주의' 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런 기억으로 북녘의 너희들, 아시아의 민중들, 그리고 이 지구의 시민들을 이 나라로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새가 넓어진 바로 그런 국가인가?

유신의 과거를 역사로 만들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열흘 전인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수정안」 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제1조) 그 법은, 바로 이런 진상 규명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들” 은(제2조 ②항) 진상 규명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시켰다.

역사화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역사의식'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의 '현재의 역사의식' 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과거 법원의 확정 판결' 에 종속되어 있다. 역사는 결코 현재에 의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일방적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는 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지나간 과거와 과거에 짓눌린 현재 모두가 죽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긴급조치를 발포하여 수많은 정치범을 양산했던 '유신체제' 의 메커니즘을 국가의 진리능력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유보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사정리법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유신체제의 작동구조와 그 가동 인력에 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우리를 감시했던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학원으로 파견한 것은 누구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관장했던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가? 교도소에서 행해졌던 그 엄혹한 구타와 폭력,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여 우리를 영구 감금을 하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악마적 본성 때문이 아니라 위협과 권력 앞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적 허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권력의 주구가 되었던 우리의 감시자나 구타자들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짓밟으려고 했으며, 그런 그들의 발상에서 혹여나 우리가 두고두고 되돌아보아야 할 인간적 취약성은 없는가? 과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나마 조직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유신체제의 진상을 알 여지가 봉쇄된다고 한다면 그 세월과 그 뒤 30년 동안 우리 삶을 제약했던 탄압의 근원을 우리는 영원히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는가?

2. 긴급조치와 그것이 상징하는 유신체제의 골격

‘유신체제’ 아래서 유신헌법에 따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이런 의문들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전후하여 그보다 더 엄혹했던 참변을 당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시작하여 1979년 10월 26일 김제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대통령 격살로 끝나는 7년간의 유신체제가 사실상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제도에 의해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시대의 파악에 필수적이다.

긴급조치는 이른바 제4공화국의 근간이었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였다. “원래 학문적으로 비상조치·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²⁾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 <http://100.naver.com/100.php?id=29968>

-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는 ‘헌법’ 차원에서나마 규정하던 국가적 또는 공적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유신체제’ 라고 불리던 박정희 체제의 정치권력의 행태에 저항하던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 탄압책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은 유신체제 아래서 발포된 9개 긴급조치의 연혁이다.³⁾

| 긴급조치(호) | 발포 시기 | 내용 요약 |
|---------|------------------------------|--|
| 긴급조치 1호 | 1974.1.8. /1974.8.23. 해제 |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의 일체 금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 긴급조치 2호 | 1974.1.8. | 긴급조치 1호 시행을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
| 긴급조치 3호 | 1974.1.14.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
| 긴급조치 4호 | 1974.4.3. /1974.8.23. 해제 |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을 반정부 국가전복단체로 규정, 대학생 대량 검거, 7명 사형선고, 1,024명 연행, 253명 군법회의 송치, 169명 실형 선고, 총형량 1650여년 |
| 긴급조치 5호 | 1974.8.23. | 긴급조치 1,4호 해제. 그러나 재판계류자 및 형집행중인 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
| 긴급조치 6호 | 1974.12.31. | 긴급조치 3호 해제 조치. |
| 긴급조치 7호 | 1975.4.8. /1975.4.8. 해제 | 고려대학교에 한해 발포, 휴업령 선포, 교내 군대 진주 |
| 긴급조치 8호 | 1975.5.13. | 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조치 |
| 긴급조치 9호 | 1975.5.13. /1979.12.8. 해제 |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 전파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에 의해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 구속기소자 약 1,000여명 추산 |

3)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법령상세검색에서> ‘긴급조치’로 검색.(2005. 05. 11. 현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제1호와 2호를 필두로 시작되어 대통령 박정희가 격살된 후인 1979년 12월 8일에 이르기까지 만 5년 11개월 총 1,669일에 걸쳐 꼬리를 물고 발표되었다. 약 6년에 걸친 이 시기는 해방 60년을 운위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현대 정치가 시행된 총 기간의 10%에 해당되는 시간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가장 길게 4년 7개월 지속된 긴급조치 9호야말로 긴급조치를 둔 유신체제의 의도를 집대성한 가장 강력한 상시법이었다.⁴⁾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國家安全과公共秩序의守護를爲한大統領緊急措置

[제정 1975.5.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1. 다음 各號의 行爲를 禁한다.
 - 가.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거나 事實을 歪曲 하여 傳播하는 行爲.
 - 나. 集會·示威 또는 新聞, 放送, 通信 等 公衆傳播手段이나 文書, 圖畫, 音盤 等 表現物에 의하여 大韓民國 憲法을 否定·反對·歪曲 또는 誹謗하거나 그 改正 또는 廢止를 主張·請願·煽動 또는 宣傳하는 行爲.
 - 다. 學敎當局의 指導, 監督下에 行하는 授業, 研究 또는 學校長의 事前 許可를 받았거나 其他 依例的 非政治的 活動을 除外한, 學生의 集會·示威 또는 政治關與行爲.
 - 라. 이 措置를 公然히 誹謗하는 行爲.
2. 第1에 違反한 內容을 放送·報道 其他의 方法으로 公然히 傳播하거나, 그 內容의 表現物을 製作·配布·販賣·所持 또는 展示하는 行爲를 禁한다.
3. 財産을 逃避시킬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 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될 財産을 國外에 隱匿 또는 處分하는 行爲를 禁한다.
4. 關係書類의 虛偽記載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移住의 許可를 받거나 國外에 逃避하는 行爲를 禁한다.
5. 主務部長官은 이 措置違反者·犯行當時의 그 所屬 學校, 團體나 事業體 또는 그 代表者나 長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 가. 代表者나 長에 대한 所屬任職員·敎職員 또는 學生의 解任이나 除籍의 命令.
 - 나. 代表者나 長·所屬 任職員·敎職員이나 學生의 解任 또는 除籍의 措置.
 - 다. 放送·報道·製作·販賣 또는 配布의 禁止措置.
 - 라. 休業·休校·停刊·廢刊·解散 또는 閉鎖의 措置.
 - 마. 承認·登錄·認可·許可 또는 免許의 取消措置.

4) 김삼용, 「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6.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은 이 措置에 抵觸되더라도 處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發言을 放送·報道 其他의 方法으로 公然히 傳播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措置 또는 이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에는 10年 以下の 資格停止를 併科한다. 未遂에 그치거나 豫備 또는 陰謀한 者도 또한 같다.
 8. 이 措置 또는 이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拘禁·押收 또는 搜索할 수 있다.
 9. 이 措置 施行後,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法律 第2條(賂物罪의 加重處罰)의 罪를 犯한 公務員이나 政府管理企業體의 幹部職員 또는 同法 第5條(國庫損失)의 罪를 犯한 會計關係職員 等に 대하여는, 同法 各條에 정한 刑에, 收賂額 또는 國庫損失額의 10 倍에 該當하는 罰金을 併科한다.
 10. 이 措置違反의 罪는 一般法院에서 審判한다.
 11. 이 措置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主務部長官이 定한다.
 12. 國防部長官은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로부터 治安秩序 維持를 위한 兵力出動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 支援할 수 있다.
 13. 이 措置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命令이나 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호, 1975.5.13>
14. 이 措置는 1975年 5月 13日 15時부터 施行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의 조항들은 긴급조치를 가동시키는 몸통으로서 이른바 '유신체제' 라는 것의 구조가 대체적으로 드러난다.

(1) 우선 긴급조치를 전면에 가동시킨 유신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 행위 중에서도 '의사소통행위' (communicative action) 자체의 철저한 통제(control), 더 나아가 그것의 원천적 억압(repression)을 의도하는 일종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이기를 의도했다.

(2) 의사소통행위의 통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위계적 감시감독체제'의 가동을 근간으로 한다. 이 때 특히 주요 감시점은 언론사, 대학 및 기업체로서 사실상 의견과 여론이 형성되고 순환되는 사회의 공적 영역 그 자체의 폐쇄이고, 이 공적 영역이 전적으로 국가권력기구의 하부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유신체제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의 전면적 국유화'였다.

(3) 따라서 국가기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가동된다기보다는 '국민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통제를 위해,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목적에 따라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작기구였다. 이 조작기구의 최일선에 '행정부' 산하의 모든 행정기관이 포진하고, 그 다음에는 '사법부' 산하의 각급 법원이 그 법적 뒤처리를 담당하였다. 이 긴급조치의 발효 과정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당시의 유신 헌법 제53조 ⑥항의 국회의 긴급조치 해제 건의권 행사는 대통령 직속 의원인 유정희가 이미 의석의 1/3을 확실하게 선점하고,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당이 다시 총 의석의 1/3을 예약할 수 있었던 당시 국회구조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의 종말과 국가기구의 전면적 행정화'였다.

(4) 문제는 이 모든 조치의 실효성을 국방부 산하의 '군'이 보증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격하시킨 가운데 국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 능력에 기대할 수 없었던 행정 집행의 효력원천은 군부의 무력에 의해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군의 무력이 가장 잘 통하기 위하여 공사간에 걸친 모든 조직은 완전히 병영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긴급조치에서 집약된 유신체제의 핵심 골격은 '모든 국가활동과 사회적 행위의 군사화'였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제 정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으며, 명백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였고,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의 포기였다.

(5) 국가 활동의 편제를 이렇게 군대식으로 편성할 경우 핵심적인 것은 그 조직 전체를 움직일 사령관, 즉 총통수권자의 존재와 그 성격이었다. 일원적 명령자가 존재하지 않은 군대식 조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을 때 유신체제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 박정희 그 자신의 실존이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권력이 특정 계층에 편중된 '과두제' 정도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에게 집중된 '독재제'에서 독재자 자신의 인격적 실존은 체제의 명운과 그 성격을 좌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신체제 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박정희 체제는 그 시효에 있어서는 행정, 사법, 입법의 국가 삼권과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군

권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박정희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으면 결코 성립할 수 없었던 '일회적' 성격의 편제에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6) 이것은 곧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가 박정희에 맞먹는 '대체 박정희' 를 배출할 수 없는 한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정희 사후 전두환의 5공체제는 전두환을 상당 정도 대체 박정희로 행세시키면서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또는 유신 체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대체 박정희' 의 연속적 출현을 전제하더라도, 박정희 유신체제가 기초하고 있었던 전략적 전망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판가름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 유신체제의 통제 메커니즘 | | | | |
|-----------------|-----------------------------|---------------|----------------|------|
| 긴급조치9호 | | | | 유신헌법 |
| 일상생활 ⇒ | 공적 영역 ⇒ | 국가기구 ⇒ | 실효성 토양 ⇒ | 최고권자 |
| 의사소통 행위 (의견) | 대학 기업 언론사 (의견과 임금) | 행정부처 말단 조직 | 군부 (폭력의 독점) | 박정희 |

3. 유신체제의 전략적 전망과 자기파멸적 성격

누가 보더라도 1972년은 '10월 유신' 과 같은 궁정 쿠데타를 일으키기에는 적합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그 해는 전년도에 감행한 위수령을 통해 서울 일원의 대학가에서 활성화되었던 대부분의 학생운동 기반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었으며 기독교 일부의 진보적 교파와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정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동서해빙 무드(데탕트)를 배경으로 남북한간에 적십자 회담이 개시되고 정권 담당자들 사이에 7·4공동성명이 합의되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일단 이완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시작된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10월 27일 이른바 '10월 유신' 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개정예에 착수하였다. 개정 헌법에 대한 일체의 토론이나 의견 표명이 금지된 가운데 공고 기간 요건만 충족한 가운데 같은 해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유신 헌법은 91.9% 투표율에 91.5%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박정희는 국내외의 큰 정세에 역행하는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였을까?

(1) 분명한 것은 이런 박정희의 조치가 그의 3기 대통령 임기를 전후하여 사전에 이미 충분히 도상 연습이 된 것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가 1969년 12월 5일에 있었던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였다. 교육법에 의해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영속적인 집권을 전제라도 하듯이 지속적 효력을 갖는 <헌장>을 작성하였다. <헌장>은 국민 교육의 장악을 통해 국민정신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응하도록 순치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⁵⁾

(2) 그런 가운데 전개된 데탕트의 정세는 박정희로 하여금 자신의 안위에 안정 감보다는 불안을 갖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무력 공세에 — 이유가 없지 않은 —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월남전 이후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6.25 전쟁을 겪은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북한과의 대결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전력투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3)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의 성과를 계속 상승시킬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1962년 이래 비록 한 해도 무역에서 수출 초과를 달성한 적은 없었으며, 대외 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의 총량은 거의 기적 같은 성장세를 타고 있었다. 한국 산업은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국면에서 전자 공업과 같은 수출 산업 육성 단계를 거쳐 중화학 공업을 주력으로 하는 고도 구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방위산업을 전면에 배치한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 상승이 “한국형” (오원철) 행정명령식 국가주도 성장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바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적극적 통제로서, 그것은 곧 생활 상승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었다. 중화학 공업에 들어가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조정하는 재정 계획은 각 기업의 투자 규모와 그에 따른 임금 계수까지 간여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노동 현장에서의 반발은 “안보적” 차원에서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안 되면 군이 나서서 진압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반국가적이고, 반경제적이며, 더욱이나 낭비적인 것으로 비춰졌다.

5) 출고,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연백 위약성과 정체성 위기」, 『한국 도덕윤리교육백서』 (한울, 2001)

(5) 사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정희는 자원과 자본이 없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을 저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만 국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히 환율 조작을 통하여 한국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인위적 조치를 항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⁶⁾ 그리고 이런 조작으로도 통하지 않을 경우 직접 무력을 동원하여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였다.

이른바 국가주도의 개발독재로 불리는 이런 정책적 수단의 총체는 국가 각 분야에 국가기구의 엘리트층이 그 엄청난 권력으로도 조정하기 힘든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국민윤리의 이름으로 도덕화되면서 사회적으로는 배금주의가 팽배해지고, 어느 정도 잉여가 창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민적 차원의 부패가 풍토적으로 배양되었다.

▶ 반공 지상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 시키고 있었다.

▶ 그가 자신의 독재강권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근거였던 한국 경제의 중화학공업으로의 재편은 그나마 형성되고 있던 기업의 투자 흐름을 급격히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소비 시장을 넘어서는 투자시장의 자연적 형성은 국가 주도의 구조정책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에 따라 다시 재벌의 산업 지배가 공고화되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드디어 '계급화'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저임금 정책의 불가피성은 국민에게 설득된 것이 아니라 강요되었다. 빈부 불균형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 욕구를 정상적인 사회정의로 균정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섬으로써 사회적 분열, 나아가 지역 대결 구도가 정치적으로 고착되는 토양이 조성되었다.

4. 긴급조치 9호세대가 한 것과 못한 것: 자유, 정의, 인권

이 박정희 권력에 맞서 긴급조치 세대는 한국 사회의 삶의 방향이 취할 미래적 지표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저항에 투신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어떤 목

6) 오원철, 「인력 자원의 국제경쟁력」,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한국형경제연구소, 1999)

표도 인간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긴조 9호 세대는 학원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 '민중'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정의와 인권이 결코 정치적 수식어가 아니라 인간 삶의 본질적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단지 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 질서이자 문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의식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시민운동과 시민민주주의의 맹아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점은 군부 체제와 전투적 대결 양상을 거쳐 가야 했던 1980년대 세대가 충분히 가질 수 없었던 소양이기도 했다.)

그러나 긴조 9호 세대는 바로 이런 가치가 실현될 구체적 정치 실천과 경제적 통찰, 그리고 전략적 조직에 대한 비전을 훈련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1980년대와 90년대를 조직 운동의 당파성 또는 제도 정치권에서의 자기 영역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하였다.

세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열세인 긴조 9호 세대는 바로 이런 개인적인 분투 과정에서 국가적 전망과 무엇보다 조직적 기개를 배양하지 못하였다. 우리 세대는 사실상 서로 분산되어 잇는 가운데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생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정도에서만 성공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긴조 9호 세대가 박정희를 넘어서는 체제적 대안을 이 사회에 제시하는 데 아직도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들이 세대를 넘어 새로운 젊은 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데 이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 시대의 박정희는 민주화의 부실과 허약함에 기생한다.

긴조 9호 세대는 박정희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다같이 겪은 세대다. 바로 이 점이 박정희 망령에 이끌리면서 방황하는 현재의 세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성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끝낼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와의 투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완결시킬 때가 오고 있다.

감옥과 수배 생활에서 보낸 그 세월은 누구에게도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자.